##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23

발의연월일: 2024. 8. 21.

발 의 자:김교흥·허종식·이학영

소병훈 · 김윤덕 · 홍기원

문진석 • 박정현 • 이훈기

이정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에 대해서는 5년간 외래진료, 입원진료, CT, MRI, PET-CT와 같은 고가의료장비 검사비, 약제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해주는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암은 수술이나 치료 이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수적이나 CT, MRI와 같은 고가의 검사비용에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추적검사 를 하지 않는 경우 암의 재발을 조기 발견하지 못해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따라서 암환자의 경우에는 산정특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적 검사에 한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도록 하여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 을 완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암환자의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한 특례) ① 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암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5년간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를 부담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례를 적용받던 암환자가 동일한 암에 대하여 추적관찰을 목적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검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에 한정한다)에는 특례기간이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를 부담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암환자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44조의2(암환자의 본인일부부
	담금에 대한 특례) ① 제4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암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5년간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
	분의 5를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례를 적용
	<u>받던 암환자가 동일한 암에 대</u>
	하여 추적관찰을 목적으로 요
	양급여를 받는 경우(제41조제1
	항제1호에 따른 검사 중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에
	한정한다)에는 특례기간이 종
	료된 이후에도 해당 요양급여
	<u>비용 총액의 100분의 5를 부담</u>
	<u>한다.</u>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시참 이제 아침기의 보이이브
	사항 외에 암환자의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rl
	<u>다.</u>